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기반의 대규모 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를 신설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마련하여 공직사회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공무원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핵심 인사교류 직위 신설 및 인사 우대 근거 마련 (안 제27조의5)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 인사교류 직위를 신설하고,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핵심 국책사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안 제7조의4)

핵심 국책사업 관련 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핵심 인사교류자 등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안 제33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인사교류자와 민간 기업 전담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안 46조 등)

8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우수 인재 추천 채용 제도 개선 (안 제21조의2)

학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 졸업(예정)자를 7급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추천 채용 직급을 확대하고자 함

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근무·연구경력 요건 완화 (안 제17조)

경채 시험의 민간 근무경력 기준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이내로 경력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개선 (안 42조)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자립준비청년을 추가하고,

기존 수급자 등의 자격 유지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민간기업 전담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민간기업(제38조의6 제1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과 관계되는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공무원(이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 해당 민간기업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3년 이상인”을 “3년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직무 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인”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급”을 “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이나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일반직 7급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이나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일반직 8급 이하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일반직 8급 이하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를 “관계 법령에서”로 한다.

제3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1.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2.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3.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4. 가(32점 미만): 10퍼센트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27조의5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근무성적평정점과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1.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경력이 있는 공무원: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제27조의5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제42조제3항 중 “2년 이상인 사람을”을 “1년 이상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청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① 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1을 준용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며,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

준을 준용하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직렬 구분이 상이한 직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목직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 준용
2.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호보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 준용
3.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 보건진료직렬 중 보건진료직류: 별표 8
4.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 별표 9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마약류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9급”을 각각 “8·9급”으로 한다.

제5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9급”을 “8·9급”으로 한다.

제65조제5항 전단 중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 제5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4호,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제50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 제5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4(민간기업 전담공무원)</u> <u>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민간기업(제38조의6제1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과 관계되는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공무원(이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 해당 민간기업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u> <u>2.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이 필요한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u>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	<u>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u>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 3년 이상(임용권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직무 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
무경력자에 대해 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
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인 -----.

5.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① -----

등을 거쳐 시·도지사, 시·도
의회 의장이나 시·도의 교육
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8급 이하
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한
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시·도
지사, 시·도의회 의장이나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
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
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도
지사, 시·도의회 의장이나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
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

----- 7급 -----

--.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
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
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
라 설치된 학교(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이나 시·
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
다): 일반직 7급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
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도지사, 시·
도의회 의장이나 시·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
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일반직 8급 이하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
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

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
다. 다만, 시·도지사, 시·도의
회의 의장이나 시·도의 교육감
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
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③ ~ ⑪ (생략)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
 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
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을 교류
 하는 경우 <후단 신설>

3. (생략)

②·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
 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
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일반직 8급 이하인 수습
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

---, -----

 -----.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
 ----- 행정안전부와 지
 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1. (현행과 같음)

2. -----

 ----- 이 경우 핵심 국정
 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

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

센트

가(32점 미만) 10퍼

센트

⑥ (생략)

<신설>

⑦ (생략)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② (생략)

<신설>

퍼센트

2.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

퍼센트

3.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

퍼센트

4. 가(32점 미만): 10퍼센트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
간기업 전담공무원, 제27조의5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인사교
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
해서는 임용권자가 근무성적평
정점과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1
년의 범위에서 승진소요 최저연
수를 단축할 수 있다.

1.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경력이
있는 공무원: 민간기업 전담공

④ 삭 제 ⑤ ~ ⑭ (생 략)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② (생 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u>2년 이상인 사람</u>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	<u>무원 지정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u> 2. 제27조의5제1항제2호 후단에 <u>다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u>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42조(시험 실시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u>1년 이상인 사람</u>,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u>청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u>를 ----- ----- -----
---	--

여 실시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46조(시험과목)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 및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시험과목) ① 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1을 준용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 중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본다.

준을 준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시험
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
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며, 4
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
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하
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직렬 구분이 상이한 직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토목직류: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1의 일반토목
직류의 시험과목 준용

2.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의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호보직류, 산림이용직류
의 시험과목 준용

3.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 공업
직렬 중 가스직류, 보건진료직
렬 중 보건진료직류: 별표 8

4.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 속기직렬 중

② ~ ④ (생략)

⑥ ~ ⑫ (생략)

제49조(신체검사)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2. (생략)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②
(생략)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속기직류: 별표 9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⑦ ~ ⑬ (현행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제49조(신체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마약류 검사 결과를 추가로 제
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1. 제1차 시험의 경우

가. (생략)

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 (생략)

2. (생략)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가. (생략)

나.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1. -----

가. (현행과 같음)

나. 8·9급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8·9급 -----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 (생략)

④ 삭제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

다. (현행과 같음)

⑤ -----

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 ⑪ (생략)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② (생략)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제1호 및 제2

-----.

-- 8·9급 -----

-----.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생 략)	-----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4